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2021. 5. 13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① 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용역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심의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직무와 권한, 책임)

-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해 검토, 심의하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광주신세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3 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내부거래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 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다.
- ⑤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주체는 이사회에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신세계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되,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한만 갖을 뿐, 그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5 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회의성립)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동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분야에 대하여

① 단일 건별 계약금액 또는 연간 매출액 50 억원 이상 신규 수의계약 중 상품 또는 용역거래

② 기타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상품 또는 용역거래

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의계약 사유 】

1) 천재지변,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긴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경쟁입찰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독점,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존재 등으로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단일 건별 계약금액 혹은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의 거래 등 경쟁입찰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4) 재무, 인사정보 등과 같은 기업현황과 관련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

5) 고객 주민번호, 연락처, 구매내역, 포인트, 마일리지 현황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

6) 경쟁입찰, 직접발주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때마다 연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7) 업무기능의 확장으로 기존 업무와의 연동 및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단계별로 구축되는 개발에 일관성 및 경영노하우를 보장하고자 할 경우

9) 기 개발 또는 구축된 전산시스템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등 전문적 지식에 의한 검증과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

10) 다수의 협력회사로부터 납품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 등의 추가 운영이 불가피하여 지정업체로의 통합 위탁이 효율적일 경우

11) 출점정보, 매장구조, MD배치 등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

12)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일정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상황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상품·서비스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14)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

-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하며,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보존한다.

제 13 조(간 사)

-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경리팀장이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4 조(독립성확보)

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15 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